

2020년도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29.(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924건(안건번호 제2020-80971호~8267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80971호~8097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0975호~8260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안건 게시물 3,84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2601~82677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최근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반도'를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481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

부(안건번호 제2020-45340호~4682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6개, 총 1,48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4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회의록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에 쇼핑몰명, 오픈마켓명, 7쪽에 오픈마켓명, 방송사명, 기기명, 8쪽에 방송사명, 기기명, 9쪽에 방송사명, 사이트명, 기기명, 10쪽에 방송사명, 16쪽에 밴드명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쇼핑몰명, 오픈마켓명, 방송사명, 기기명, 밴드명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쇼핑몰명, 오픈마켓명, 방송사명, 밴드명은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픽처스', '일본 후지TV', '월트 디즈니컴퍼니', '이십세기폭스', '소니픽처스', 'OCN', 'MBN', '블리자드', '한글과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A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92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20-20-80971호~8267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0971호~8097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웹하드 사이

트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직접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채증 후 보호원에 신고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합법시장 판매 현황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합법시장에서 단행본으로 판매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80971호~80974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게시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함.
- B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0971호~8097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0975호~8260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80975호~8260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A 위원, B 위원: (심의안건과 증거자료를 확인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0975호~82600호는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0975호~8260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2601호~8267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긴급 대응 저작물'임. 보호원은 현재 상영중 또는 상영예정인 영화 저작물이나 정식 공표예정인 음악저작물 등과 같이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물을 '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해 최우선 조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보호원 내규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의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등에서 긴급 대응 저작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화 '반도'는 2020. 7. 15. 개봉한 최

신 국내 영화로 한반도를 점령한 좀비에 관한 내용임. 영화 '부산행'의 후속작으로 현재 박스오피스 1위임. 국내에서만 오늘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이 해당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최근 해당 영화가 불법복제물로 제공되고 있어 보호원이 해당 영화를 '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하였고, 긴급 심의를 요청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네이버 밴드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MP4 파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다운로드 받아 재생한 화면을 보면 사행성 사이트 URL이 워터마크로 표시되어 있음. 영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에서 최초 불법 복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함.

- A 위원: 채증된 화면을 보면 영화의 화질이 낮아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반도'는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도 상영 중인데, 해외 영화상영관에서 불법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큼. (심의대상 게시물의 목록화면을 제시하면서)다수의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반도'의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음.
- B 위원: 밴드 내에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음. 밴드의 경우 계정 정지가 되지 않아 제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밴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C 위원: 밴드가 폐쇄형일 경우에는 조사해서 찾기도 어려움.
- 성원영 전문위원: 밴드는 네이버와 별도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음. 밴드 이용자가 여러 개의 밴드에 가입해서 밴드 목적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밴드 이용자에 대해 계정정지의

시정권고하는 것은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임.

- C 위원: 밴드가 웹하드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재하는 것이 어려워 보임. 다만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의 경우 게시판 정지처럼 밴드 자체를 운영 중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건지?
- 성원영 전문위원: 게시판 정지의 경우 저작권법 133조2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있어야 가능함.
- B 위원: 게시판 정지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게시판 자체가 정지됨. 다만 법 시행이후 게시판 정지를 명령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저작권 침해에 관해 국내외 사이트에 균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 정책이 매우 강력하여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있음. 반면에 국내 사이트는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계정정지 조차 쉽지 않음.
- A 위원: 유튜브가 매우 엄격한 저작권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의 횡포라고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횡포로 볼 수 있지만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광고 수익 등 채널 운영자의 수입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운영자에게는 셀프 필터링 내지 자정 노력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됨. 유튜브가 일종의 자기 완결적인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었

다고 생각함.

- A 위원: 헌법 전공자들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엄격한 저작권 정책이 표현 행위에 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봄. 유튜브 플랫폼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 방침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유튜브 플랫폼이 제시하는 규율에 순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순차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B 위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뿐만 아니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하는 가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밴드에서는 명품을 복제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보임. 밴드의 폐쇄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음.

- A 위원: 1기 심의위원회에서도 밴드 관련 사안을 심의에서 많이 다뤘음.

밴드를 개설하는 것은 이용자들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마케팅을 위해 남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소통장소로서의 밴드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A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보고서 14페이지와 과거 심의 사례를 각주 5번에 정리를 해놓았음.

심의대상 게시물인 영화는 저작권법적으로 쟁점이 있지 않지만 영화 '반도'가 불법복제되어 전송되고 있어 '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하여 보호원이 시급하게 대응하고 있어 별도로 보고하였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82601호~8267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심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영화 '반도'의 권리와 사전에 협의해서 '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후 시급하게 심의를 요청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반도'는 해외에 불법복제물이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 보호원이 권리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영화 '해운대'도 해외에 불법복제물이 유출되었을 때도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근 개봉하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저작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2601호~82677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80971호~8267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5340호~46820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5.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오영주